

SW사업자 신고제도 실태조사를 통한 신고제도 절차 및 활용 개선방안의 도출

임규건* · 김중한** · 김현수*** · 양경식****

An Improvement of Software Company Reporting System of Korea through Empirical Survey

Gyoo Gun Lim* · Joong Han Kim** · Hyun Soo Kim*** · Kyung Sik Yang****

■ Abstract ■

The current software company report system in Korea has many problems in it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system by surveying the contracting officials and contractors in software development. By analyzing current status and some problems with the survey results, we derived an feasible improvement scheme for the software company report system. We suggested efficient procedures and reporting items for the registration process, some benefits for contractors, and the short-term direction for its implementation.

Keyword : Software Company Reporting System, Software Survey, Software Policy, Software Business, Software Regulation

1. 서 론

최근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량 소프트웨어 및 SI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 SKC&C 공공사업팀

해서는 현재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를 강화하거나 등록제 등으로 변경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는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 등 소프트웨어 수요자에게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그리고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 현재 SW사업자 신고제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1996년부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주관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약 6,334개 업체가 SW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5년 약 7,560개 업체가 SW사업자 신고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고제도는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택하기 위해 입찰업체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되지 못해 그 효과성이 문제가 있으며, 신고 기업들이 신뢰할만한 데이터로 정확히 신고하도록 하는 성실신고 유인대책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 신고제도는 양적인 실적데이터 이외에 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여 건전한 적격 기업과 부적격 업체를 분별하지 못하므로 신고자료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안 도출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을 통해 현행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 제 2장에 현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제 3장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의 주체인 수주자와 이를 활용하는 발주자를 중심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수발주자 응답결과에 대해 통합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신고제도 절차 개선안 및 활용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제 5장에서 결론으로 정리하였다.

2. 신고제도 현황 및 문제점

2.1 SW사업자 신고제도 현황

SW사업자 신고제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1996년부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주관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SW사업자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SW산업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나 2004년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18호)을 개정하면서부터 최근까지 SW산업 연차보고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SW사업자 신고 증대에 관한 수치를 연도별로는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2005년의 경우 약 7,560개 업체가 SW사업자 신고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SW사업자 신고 업체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표 1> 참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는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 등 소프트웨어 수요자에게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제공과 소프트웨

<표 1> 연도별 SW사업자 수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회사수	756	985	1,733	2,460	3,720	5,418	5,482	5,571	6,334	7,560
증가율	N/A	30.3	75.9	42.0	51.2	45.6	1.2	1.6	13.7	-

* 2005년의 경우 National Software Forum 2006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3년도 SW산업 연차보고서 참조 및 보완

〈표 2〉 SW사업자 신고제도 개정내용

	개정이전	개정이후
사업 분야	시스템통합사업, 소프트웨어 수탁 개발사업, 패키지 S/W 개발·공급사업,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사업	컴퓨터관련(SI 포함)서비스사업, 패키지 SW개발·공급사업, 디지털컨텐츠 개발·공급사업, DB제작·공급사업
신고 기간	매년 4월 1일 ~ 6월 30일	사업결산일 종료후 4개월 이내
제출 서류	사업자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사),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제외),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업부문 세부신고 내역서 및 실적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정보통신공사업 허가증 사본, 수출실적 계약서 사본, 재신고의 경우 기교부된 사업자신고확인서(원본), 업무별담당명세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 소프트웨어사업대장, 사업대장의 실적 증빙서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업무별담당명세서

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그리고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며, 2004년 데이터의 정확성 향상 및 실적공인을 위해 신고항목을 일부 개정하였다. 다음 <표 2>는 개정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징적 변화는 소프트웨어사업 신고분야를 컴퓨터관련(SI 포함) 서비스사업, 패키지 SW개발·공급사업, 디지털컨텐츠 개발·공급사업, DB제작·공급사업으로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 대해 SI사업의 경우는 디지털 컨텐츠와 DB제작이 사업의 파생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디지털타임스, 2004. 6. 4). 한편, 수행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업대장의 경우 수급형태 및 하도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이전보다 소프트웨어 사업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신고기간도 매년 4월~6월로 한정하였던 것을 사업결산일 종료 후 4개월 이내로 개정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SW사업자 신고제도는 크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부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관해 규정을 다음 <표 3>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4조 ①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목적에 관한 것으로 SW사업자 신고는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것이며, 신고가 의무 또는 강제가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4조 ②와 ③은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과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것으로 현재 SW사업자 신고에 대한 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수행하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 및 분야별 신고에 관한

〈표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년 7월 22일]]

사항과 국가기관 등의 범위 그리고 대기업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프트웨어 사업의 세부분야 및 분야별 신고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다. 세부 SW사업자 신고요령에 관한 규정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18호에 제시되어 있으며, 신고요령 9조로 구성되어 있다.

2.2 현행 제도의 문제점

2.2.1 신고제도의 효과성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책판단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발주기관에게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정 사업수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신고제도의 시행목적은 현재 일부분만이 충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신고제도를 통해 취합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외형적인 통계자료는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중소소프트웨어업체의 참여지원, 우선구매제도 등과 같은 정책입안의 근거로서 소프트웨어산업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택하기 위해 입찰업체를 평가해야 하는 경우 현재의 신고자료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들 간의 정보 비대칭 구조는 계약에 있어서 기회주의의 위험을 발생한다. 특히 소프트웨어사업과 같이 복잡한 기술이 통합되어 있는 사업의 계약이라면 발주자와 입찰업체와의 정보비대칭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타 산업에서 시행 중인 면허제도, 자격제도, 등록제도 등은 이러한 기회주의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신고업체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와 신고한 사업실적을 기록한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지만 신고확인서나 실적확인서는 입찰참여자격을 보장해 주

는 이외에 발주자에게 업체선택을 위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적확인서는 이전에 유사한 사업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뿐 특정 사업수행평가결과는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입찰사업자의 기술수준, 경영상태 등은 업체평가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는 미비한 실정이다.

패키지소프트웨어의 경우 우수 소프트웨어('GS') 품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발주자들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제품정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발주자로 하여금 가격요소를 사업자선정의 중요 요소로 적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등록제도, 허가제도 등과 같은 진입장벽을 높이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현행 신고제도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제고하여, 이를 통해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발주자는 우수한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건전한 소프트웨어산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2.2 성실신고 유인대책 미비

현재 SW사업자 신고를 통해 신고업체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게 된다.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의 법적 자격 인정
- ②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입찰 참여 자격요건
- ③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 2004-4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제도의 성실한 이행" 평가항목 적용 및 가점 부여
- ④ 소프트웨어사업 실적신고를 근거로 "소프트웨어사업이행실적확인서" 발급(고시 8조)
- ⑤ 대기업소프트웨어참여제한(정보통신부고시 제 2004-11호)에 근거한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금액 인정

- ⑥ 정보통신부 지원 각종 사업(융자사업, S/W공제조합 가입 등)에 S/W사업신고자에 대해 혜택 부여
- ⑦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관의 적격업체 추천 의뢰 시 신고정보(사업실적·재무현황 등)를 기초로 추천

위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신뢰할만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특별하게 비중 있는 혜택이 없다. 예를 들어, 발주기관은 입찰업체의 기술성평가 시 사업자신고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위 ③번 항목). 하지만,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을 보면 “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부문”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서 신고여부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으며 또한 “성실한” 신고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 실적신고를 근거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행 실적확인서”(위 ④번 항목)는 기술성평가 시 “개발계획부문”항목에 포함되며 이 항목에서 평가하는 다른 항목의 중요도와 비교할 때 평가자의 기술성 평가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결국 신고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2.2.3 신고자료의 활용도

건전한 적격 기업과 부적격 업체 간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산업 환경은 혼탁해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부적격/부실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만 현행 사업자신고제도는 산업통계적인 목적 이외에 산업구조의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적격업체 선정 시 기술제안서를 근거로 기술성을 평가하는데 이는 특정 사업

의 기술성 위주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기술성평가기준에는 ‘유사분야에서의 개발경험’, ‘경영상태’ 등 일부분야가 포함되어 있지만 입찰업체의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용도, 보유 기술력 등 기업단위(firm base)의 전반적인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사업자의 전반적인 사업수행능력을 각 단위사업별로 평가한다면 발주기관이나 사업자에게 모두 업무증복에 따른 행정적 비용을 요구하게 되므로 정기적인 사업자 신고제도를 통해 기업단위의 평가 근거자료를 취합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업단위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사업단위의 기술성평가를 구분하게 된다면 소프트웨어 생산물의 실수요자인 발주기관의 사전 선별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장원리의 작동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사업자신고서에는 신고업체의 총인원 중 기술인력이 몇 명이 되는 지를 산술적으로 입력하고 있다. 단순하게 기술인력의 수만 신고한다면 이는 통계적 목적 이외에 신고업체의 기술수준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 만일 등급별 보유 기술인력의 수를 세분하여 신고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기술수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현행 신고제도는 양적인 실적데이터 이외에 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질적 측면의 사후평가 정보가 축적되고 활용되도록 사업자 정보를 관리한다면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선별능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자 선정과정에서 우수한 생산 실적 및 성실한 생산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성실 업체가 부실 업체와 구별된다면 이것은 불성실 관행에 대한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성실관행을 정착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즉, 불성실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기능은 인위적인 진입 규제에 의하기보다는 발주자의 사전 심사 및 사후평가 능력의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3. 실태 조사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SW사업자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표 3>과 같이 발주자용과 수주자용으로 조사서를 구성하여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먼저, 발주자용 조사서는 크게 SW사업자 이행 실적 확인서에 대한 사용여부 및 만족도 그리고 활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문항과 발주자 입장에서 SW사업자 신고시 추가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항목 및 이를 활용하였을 때 받고 싶은 혜택을 중심으로 조사서를 구성하였다. 수주자용 조사서의 경우 SW사업자 신고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현행 SW사업자 신고제도의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현행 SW사업자 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발주자 조사서와 동일하게 추가 및 수정하였으면 하는 항목 및 혜택 등에 대해 조사서를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05년 하반기 2개월에 걸쳐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협조

를 받아 수행되었으며, 조사는 E-mail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전체 400부의 설문을 수주자와 발주자에게 각각 200부씩 송부하였으며, 전체 설문의 회수율은 약 26%였다. 그리고 발주자에 비해 수주자의 설문 회수율이 높게 나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에 대해 발주자보다 수주자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응답 기관 분석

응답기관의 기관구분을 살펴보면 전체의 약 47.3%가 컴퓨터관련(SI포함)사업, 패키지 SW가 27.8%, DC사업 13.6%, DB사업 1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컴퓨터관련(SI포함)사업을 선택한 80개 업체 중 약 43.8%인 35개 기업만이 SI사업 하나만을 선택했고, 그 나머지 대부분은 2개 이상을 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베이스 사업의 경우 순수 데이터베이스 사업만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선택되었다. 따라서 선택비중이 높은 컴퓨터관련(SI포함)사업의 경우 보다 업종구분을 세

<표 3> 수/발주자용 조사서 구성 항목

발주자용 설문 항목	수주자용 설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사업자이행실적 확인서 사용 여부 ■ SW사업자이행실적 확인서 사용 않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 실적 확인 방법 ■ 이행실적 확인서 전반적 만족도 ■ 이행실적 확인서 활용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성 : 사업실적, 기술성평가 ▷ 활용성 : 수주자, 혜택, 제도 ■ 이행실적 확인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 제도적 의무화, 등록제 강화 ▷ 신뢰성 : 신고항목, 사후평가제, 인력정보, 실사제도, 기술성 평가, 신용평가, 등급제도 ▷ 활용성 : 웹시스템, 발주자 혜택, 수주자 혜택 ■ SW 사업자신고시 추가 또는 수정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혜택 ■ 웹서비스를 통한 발주관리프로그램에 제공되기 원하는 서비스 ■ 실적확인을 통해 받고 싶은 혜택 및 기타 제안 ■ 기타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하게 된 계기 ■ SW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 ■ SW사업자신고제도 전반적 만족도 ■ SW사업자신고제도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 : 신고절차, 입력항목 ▷ 비용 : 시간, 금전 ▷ 신뢰성 : 사업실적, 기술성평가 ▷ 활용성 : 발주자, 혜택, 웹시스템, 제도 ■ SW 사업자신고제도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 제도적 의무화, 등록제 강화 ▷ 비용 : 소요비용 ▷ 신뢰성 : 신고항목, 사후평가제, 인력정보, 실사제도, 기술성 평가, 신용평가, 등급제도 ▷ 활용성 : 웹시스템, 발주자 혜택, 수주자 혜택 ■ SW 사업자신고시 추가 또는 수정 항목 ■ SW 사업자신고 시 받은 혜택 ■ SW 사업자신고시 추가하고 싶은 혜택 ■ 기타 제안

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DB사업의 경우 컴퓨터관련(SI포함)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중 6개 업체를 제외한 전체 기업이 소프트웨어사업자에 신고되어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설문 응답기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후속 분석을 수행하였다.

3.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계기

SW사업자로 신고한 계기는 발주처에서 이행실적확인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4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위 SW사업체들의 추천 및 웹페이지, 신문 등의 홍보자료를 보고 등록한 경우가 각각 1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가기관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약 1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인 의무감 보다는 현실에서의 활용을 위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신고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과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및 재정의 지출이 너무 많이 요구된다는 응답이 각각 2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혜택이 적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1건으로 나타났다.

3.4 SW신고제도의 전반적 만족도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에 대한 응답기업의 만족도는 불만족이 9.9%(8건), 보통 61.7%(50건), 만족 27.2%(22건), 매우만족 1%(1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보통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1건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현행 신고제도의 문제점

다음 <표 4>는 현행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

도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항목별 평균값 및 표준 편차값을 보여준 것이다. 응답기업들이 현행 신고제도의 문제점으로 고려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신고에 따른 혜택이 적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행실적 확인서를 요구하는 발주자의 수요가 적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따른 비용, 데이터의 정확성, 기술성평가에 대한 신뢰성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적게 나타났다.

<표 4> 현행 신고제도의 문제점

	N		평균	표준 편차
	유효	결측		
SW사업자 신고에 따른 혜택이 적다.	96	1	3.6771	.97866
프로젝트 발주 시 SW사업 이행실적 확인서를 요구하는 발주자의 수요가 적다.	96	1	3.3958	1.04104
사업자 신고제도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내용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96	1	3.1979	.86596
사업자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	96	1	3.1875	.94382
사업자 신고 항목이 불필요하게 많다.	96	1	3.1563	1.02934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96	1	3.1458	1.03598
기술성평가 항목이 미흡하여 신뢰성 평가에 문제가 된다.	95	2	2.9579	.74256
신고 시 이용하는 웹시스템은 이용하기 불편하다.	95	2	2.8316	.93003
입력된 사업실적 데이터가 부정확하다.	96	1	2.5625	.91551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	95	2	2.3684	.96814

3.6 SW사업자 신고 추가 및 삭제 항목

현재의 SW사업자 신고 항목은 다음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30여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SW사업자 신고서는 전체 10여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행실적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대

장은 일반현황과 세부현황을 포함하여 10여가지 항목으로 그리고 이에 대한 첨부서류로 10가지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표 5〉 현행 SW사업자 신고 항목

현행 SW사업자 신고 항목	
SW사업자 신고서	신고기간, 신고분야, 회사 기본정보(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소재지, 기업형태 등), 종업원수(상시 및 SW사업관련 종업원), 재무현황, 신고분야별 SW매출 및 수출액, 담당자
SW사업대장	프로젝트 및 제품(솔루션)명, 산업분야, 사업분야, 발주자명, 프로젝트구분(공공, 민간), 지역, 수급형태, 낙찰방법, 공동수급자 현황, 원수급자 현황, 계약 및 매출액, 기술인력참여현황, 하도급 현황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소프트웨어 사업대장, 수출계약서 사본,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납품실적증명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이 항목들에 대해 삭제 및 수정할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 <표 6>과 같은 순서로 삭제 요청 항목이 도출 되었다. 세금계산서가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서 13업체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급형태, 계약서, 기술인력참여현황, 납품실적증명원, 하도급현황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낙찰 방법,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지역 등의 요청항목이 있었다. 주로 수주자들이 신고를 위해 번거롭게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요청항목은 인증서 사본, 기술 협력 계약서 사본, 인증마크, 특허권, 시상내역 등 주로 기업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증시켜 줄 수 있는 항목이었다. 이밖에는 신용도, 신고분야별 매출액, 통신장비관련시공분야실적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문화 된 기업에게 유리한 항목들로서 신고기업 간의 차별화에 대한 니즈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삭제요청 설문조사 결과

삭제요청항목	요청 업체수	삭제요청항목	요청 업체수
세금계산서	13	지역	4
수급형태	10	법인등기부등본	4
계약서	9	재무제표	3
기술인력참여현황	9	재무현황	3
납품실적증명원	9	공동수급자 현황	2
하도급현황	6	원수급자 현황	2
낙찰방법	5	사업분야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4	사업자등록증	2

3.7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시 받은 혜택

한편,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통해 혜택을 본 사항은 다음 <표 7>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정부

〈표 7〉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시 받은 혜택

사업자 신고시 혜택	갯수	응답 비율	사례 비율
정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입찰참여자격 요건	64	29.4	77.1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의 법적 자격인정	54	24.8	65.1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관의 업체추천 의뢰 시 추천의 기초자료로 활용	29	13.3	34.9
신고된 실적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업 이행실적 확인서 발급(고시 제8조)	23	10.6	27.7
정보통신부 지원 각종 제도 및 사업에 대한 혜택 부여	20	9.2	24.1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4호)에 의해 평가항목 적용 및 가점 부여	18	8.3	21.7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제도(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11호)에 근거한 사업참여하한금액 인정	10	4.6	12.0
전체 응답	218	100.0	262.7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시 입찰 참여자 요건 부여가 전체의 약 2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의 법적 자격 인정이 2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참여 하한금액 인정,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항목 적용 및 가점 부여, 정보통신부의 지원 및 혜택 등은 낮게 나타나 혜택으로의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개선안 도출

4.1 개선안을 위한 접근법

본 연구에서는 개선안 도출을 위해 설문대상자를 수주자, 발주자로 나누어 설문항목 중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제도, 비용, 신뢰성, 활용성 측면으로 12개 항목을 선정하여 각 항목의 평균 점수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시급 도입, 대책필요, 긍정적 고려, 향후 고려, 부정적 고려로 분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발주자를 통합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산술평균과 신고주체가 수주자이므로 수주자 가중치를 발주자의 2배로 설정하여 보정평균을 내어 좀 더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하여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수발주자 통합 개선안 분석

우선순위	발주자	수주자	산술평균	보정평균	
신고양식 항목의 단순화	3.33	3.70	3.52	3.58	
수주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2.67	3.81	3.24	3.43	
신고제도 활용 강화	3.50	3.20	3.35	3.30	
SW 사업자의 등급	3.67	2.92	3.29	3.17	
기술성평가 항목을 강화	3.67	2.69	3.28	3.15	
등록제도 강화	3.67	2.86	3.26	3.13	
발주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2.67	3.31	2.99	3.10	
사후프로젝트 평가	3.67	2.79	3.23	3.08	
홈페이지를 통한 통합 발주관리서비스	3.33	2.92	3.12	3.05	시급 도입
신용평가 항목	3.33	2.82	3.08	2.99	대략 필요
실사제도	2.67	2.22	2.44	2.37	긍정적 고려
전체 참여 인력에 대한 정보	3.00	2.03	2.52	2.35	향후 고려

수주자·발주자의 의견을 종합 분석해보면 가장 시급한 항목으로 신고양식 항목의 단순화, 수

주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신고제도의 활용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 항목의 단순화, 신고제도의 활용강화 등은 수주자와 발주자 양 측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주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부분의 경우 발주자가 느끼는 필요성은 적은 반면 수주자 측은 가장 시급히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W사업자의 등급, 기술성평가 항목 강화, 등록제도 강화, 발주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등이 있는데 이는 수주업자 선정 시 정확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발주자측면의 필요성이 강하다. 하지만 수주자 또한 긍정적인 고려 또는 향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없이 진행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이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후 프로젝트 평가, 홈페이지를 통한 통합 발주관리 서비스, 신용평가 등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고려할 사항들로 장기적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며, 실사제도와 전체 참여 인력에 대한 정보는 불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발주자의 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인력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수주자는 준비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회사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개선안을 토대로 긴급성과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다음 <표 9>과 같은 단기 및 근본적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표 9> 개선안 도출

개선안	구분	구체적 내용
단기적 개선안 (신고제도 절차 및 활용 개선안)	• 신고절차 개선 • 수주자 혜택의 추가 • 신고제도의 활용 강화	
근본적 개선안	• 등록제도 도입 • 사업자 능력평가 제도 도입 • 사업자정보의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	

단기적 개선안(신고제도 절차 및 활용 개선안)은 즉시 시행 가능한 것 또는 중장기 개선안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시급한 항목을 위주로 설정한 것이다. 신고절차의 개선, 수주자 혜택 추가, 신고제도의 활용 강화 추진 등이다. 즉시 시행 가능한 항목들을 먼저 시행함으로써 단기간에 실효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제도의 활용을 강화하여 등록제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 개선안은 단기적 개선안 시행 후 필요성이 부각되는 근본적인 개선안으로서 등록제도 도입, 사업자 능력평가 제도 도입, 사업자정보의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도출되었다. 신고제도의 의무화 추진 이후에 시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항목들로 이를 통해 체계적인 제도화 및 SW산업의 발전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 할 수 있다.

4.2 신고제도 절차 및 활용 개선안

신고제도 절차 및 활용 개선안은 즉시 시행 가능한 것 또는 근본적 개선안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시급한 항목을 위주로 설정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신고항목의 삭제, 보완, 추가 등 신고항목의 단순화를 통해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가점 제도를 통한 수주자 혜택을 추가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신고제도의 활용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2.1 신고항목 및 절차 개선

현재의 SW사업자 신고 절차는 크게 온라인을 통한 선행접수와 오프라인 증명을 통한 확인,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신고 항목은 총 30여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불필요한 신고 항목 제거, 필요한 신고 항목 추가 등을 통해 신고항목을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표 6>에 제시한 결과와 같이 삭제 및 수정되어야 할 항목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SW 신고를 주관하고 있는 SW산업협회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삭제 및 수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확인절차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항목별 필요성에 따라 '절대필요/필요/삭제가능'으로 분석하였는데, 삭제가능 항목으로 제시된 항목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이 두 항목은 대법원(<http://www.iros.go.kr>) 및 국세청(<http://www.nts.go.kr>)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온라인을 통한 인증으로 관련 프로세스를 단순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삭제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개선 가능한 필요항목은 하도급과 관련된 수급형태, 낙찰방법, 하도급현황, 공동수급자 현황, 원수급자 현황과 기술인력 참여현황, 지역 등이며, 이들 항목은 향후 관련 정책이 변하거나 대체 할 DB가 구축될 경우 그리고 활용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SW신고에 기초자료로서 SW산업협회 입장에서 정확한 실적 확인 및 SW산업현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납품실적증명원, 재무제표, 재무현황,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사업분야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W산업협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요청 항목들의 추가가능여부도 확인하였는데, 인증서 사본, 특허권 등 추가요청 항목들은 현재 특성화된 일부 기업에게만 이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업체의 등급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추가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업체들 중에 업체간의 우수성을 입증하기를 원하는 니즈가 있는 상황 이므로, 향후 가점제도 등을 시행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업자 신고 절차의 개선은 크게 입력항목의 온라인화와 입력시의 기본 정보의 재활용, SW사업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절차개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화 추진

온라인상으로 인증 가능한 것은 관련기관과 협

의하여 온라인처리를 하여 중복된 프로세스를 최소화한다.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은 현재 온라인화 가능한 서류이다. 향후 가점제도 등을 도입한 이후 온라인 확인이 가능한 특허권, 신용도평가와 같은 인증서는 발급기관과 협의하여 온라인 인증을 통해 확인하여 프로세스를 단축시킬 수 있다.

□ 회사 기본정보의 재활용

현재는 매년 회사 정보를 기입할 때마다 회사 기본정보를 새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회사 기본정보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정보 그대로 사용하고 변경사항만 수정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신고를 위해 입력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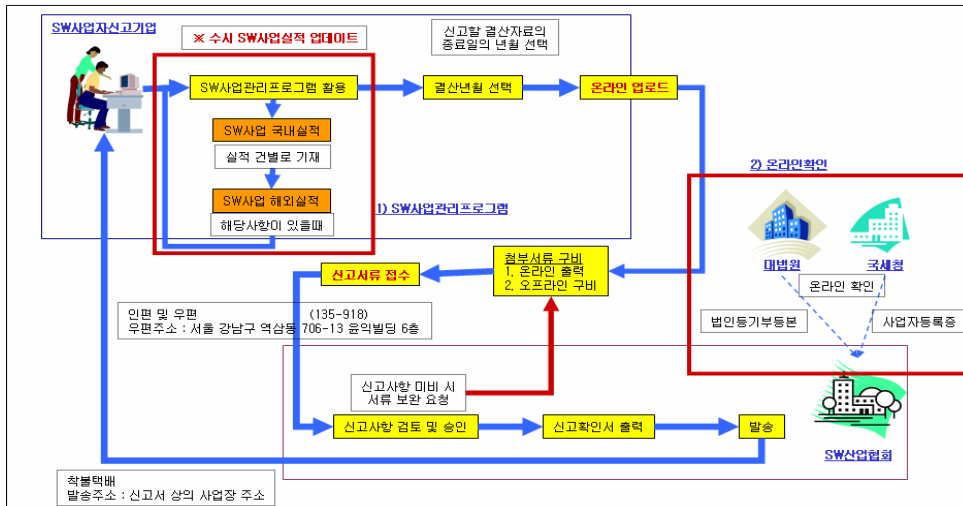
□ SW사업 관리 프로그램 도입

현재 SW사업자등록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사업영역 및 신고분야, 회사명, 설립연월, 본사소재지, 기업형태, 상시종업원수, SW사업 관련 총인원, 재무현황, 신고분야별 SW매출 및 수출액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일일이 웹브라우저에 입력해야 한다. 이것을 신고기

간마다 반복하는 것은 담당자에게 큰 부담이다. 이에 기업용 SW사업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SW사업관리 프로그램은 평소에 담당자가 사업대장을 관리하여 수시로 변경,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 기간에 쉽게 업로드, 등록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매번 부담이 되는 사업자등록을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절차 개선

현행 SW사업자신고 절차는 크게 온라인을 통한 사업자신고서 작성과 오프라인을 통한 신고서류 인증 두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두 단계는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림 1]는 개선 후 SW사업자신고 절차 예상도이다. 변경된 부분은 첫째 SW사업자 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신고절차 축소이다. 수시로 사업실적을 업데이트 한 후 등록시기가 되면 온라인으로 업로드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법원,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관련 서류를 온라인 인증하는 것이다. 개선된 프로세스를 통하여 현행 프로세스에 비해 수 일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 개선 후 예상 SW사업신고절차

4.2.2 수주자 혜택 추가

수주자 혜택 추가는 수발주자 설문결과 시급히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혜택은 크게 프로젝트 수주시 혜택, 세제 및 금융지원, 홍보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SW전문인력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혜택을 받을만한 지에 대한 평가와 업체별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가점제도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하고 우수기업에게 프로젝트 수주시 혜택,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그림 2] 참조).

현재 신고제 방식은 입찰 시에만 자격제한으로서 활용되고 있고 해당 기업의 성실한 신고 및 SW사업 수행 활동 및 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없다. 가점제도를 이용하여 우수 SW업체를 중심으로 차별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한다면 성실한 신고와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SW산업을 육성하려면 기술력 등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점제도는 성실 신고자를 선정하여 가점을 주는 성실 신고자 가점, 매출액과 기술성 등 SW산업발전의 기여도에 따른 가점, 발주자의 사후평가에 따른 가점 등을 이용하여 선별 시행 할 수 있다. 성실신고자, 매출액 등의 가점은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 기술성, 사후평가는 향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등급에 따라 지원제도를 통해 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수주자 혜택의 추가

이상의 가점제도를 통해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크게 프로젝트 수주, 세금·금융 혜택, 홍보지원, 경력증명서 발급 등의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 수주시 혜택

프로젝트 입찰시 SW사업신고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제도 사업자로서 법적 자격 또는 프로젝트 입찰 참여 자격 등으로 수주시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주자에 대해서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기업 평가를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위에 설명한 가점제도를 통해 기업선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공공기관 프로젝트 수주시 가점 등을 부여하여 우수기업들의 선별 및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 세제/금융지원 혜택

우수 기업들에게는 SW산업에 기여한 만큼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소 SW벤처기업의 경우도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동원력이 약해 경쟁에서 기존 기업에게 밀리는 등의 진입장벽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우수한 기업을 선별, 지원하여 건강한 산업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지원 혜택으로 정책정부자금 또는 금융기관 대출시 지원자격 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병역특례업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기술신용평가 기업대출자금 선정시 가점부여,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선급금지급보증 등의 보증업무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이 있고 성실 신고자에 대해 인지세, 등록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세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 홍보 지원

중소기업업체에서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기업홍보이다. 기업체 및 정부기관에 업체에 대한

홍보, 관련 홈페이지에 기업 소개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홍보는 SW협회나 신고제 공식 홈페이지 내 또는 특정 도메인을 통해 홍보 카테고리를 생성한 후 제공 솔루션 및 다양한 기업정보를 게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기업의 자료를 체계화 한 뒤 제공 솔루션, 회사명, 관련분야 등 다차원 검색을 지원하고 일종의 e-마켓플레이스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개인 정보 입력을 통한 경력증명서 발급

현재 기술인력 참여현황에서는 프로젝트 참여 직무의 PM급 1인 이상을 기재하게 되어있다. 현재 일반 SW전문인력들의 경력증명서는 각각의 관련회사를 방문하여 준비해야 한다. 입력된 기술인력에 대해서나 또는 개인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경력사항을 입력할 수 있게 해주면 발주자는 정확한 인적정보 확인이 가능해지고 수주회사 또는 개인별로는 경력증명서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4.2.3 신고제도의 활용 강화 추진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주자 및 수주자 모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모든 관련 발주자의 참여와 수주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구체적 개선방안은 공공부문의 시스템통합 사업을 관리하는 정보화지원사업 관리요령과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표준프로세스 지침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기관 또는 주관기관은 일정규모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자신고를 행한 자 중에서 시스템공급자를 선정하도록 동관리요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표준프로세스

지침은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특성화된 발주·관리 표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보화사업의 성공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지침이다. 이 지침에서 국가 정보화 차원에서 수행되는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발주프로세스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자임을 확인하는 작업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현행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는 그 효과성과 활용성에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의 실태를 수주자와 발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발주자의 개선의견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즉시 시행 가능한 것 또는 중장기 개선안의 기초가 되는 단기적 개선안으로 신고절차의 개선, 수주자 혜택 추가, 신고제도의 활용 강화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항목들을 먼저 시행함으로써 단기간에 실효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신고제도의 활용을 강화하여 등록제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근본적으로는 등록제도의 도입, 사업자 능력평가 제도 도입, 사업자정보의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서 체계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관리의 제도화 및 SW산업의 발전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계경문, "SI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SI학회지 제2권 제2호, 11, 2003, pp31-37.
- [2] 일본경제산업성(<http://www.meti.go.jp/policy>), "SI 등록제도", 1988.

- [3] 정보통신부, “SI산업 활성화 방안”, 장관간담회 안건, 2004.
- [4] 중국정보산업부 “컴퓨터정보시스템통합 자격 인정제도”, 2000 (<http://ccec.gov.cn>)
- [5] 한국SI연구조합, “2005년도 IT서비스 산업 시장 · 산업 환경전망”, SI연구조합 조사연구 자료, 2005.
- [6]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자 신고 항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내부자료, 2003.
-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3년도 SW산업 연차보고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4
- [8] Gartner Dataquest Guide, “Software Market Research Methodology and Definitions, 2003~2004”, Gartner, 2004.

◆ 저 자 소 개 ◆



임 규 건 (gglim@hanyang.ac.kr)

KAIST 전산학 학사, POSTECH 전자계산학 석사, KAIST 경영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삼성전자, KT 연구개발본부 전임연구원, 국제전자상거래 연구센터(ICEC)의 연구위원,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를 거쳐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전자거래학회 이사, 한국생산성학회 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IT서비스학회 이사, 한국기업평가원 이사, 한국지능정보시스템 학회 이사, UCI이용자 포럼 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e-비즈니스 경영(2005, 이프레스), 디지털경제 시대의 경영정보시스템(2003, 사이텍미디어) 등이 있으며, 관심분야는 e-Business, IT 서비스 경영, MIS, Intelligent Systems 등 이며, 20여개의 프로젝트 참여 경력과 Journal of Organizational Computing, 한국IT서비스학회지, 경영정보학회지 등의 논문과 관련 특허가 있다.



김 중 한 (jhkim@kyonggi.ac.kr)

고려대학교 이과대학에서 학사, Bowling Green 주립대학에서 전산과학으로 석사,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에서 경영정보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관심분야로는 정보통신기술의 전략적 활용, IT서비스 정책 등이며,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등 국제학술지와 한국IT서비스학회지, 경영정보학연구 등 국내학술지에 발표하였다.



김 현 수 (hskim@kookmin.ac.kr)

서울대학교에서 공학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경영과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Florida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한 후, 현재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연구교수, University of Florida의 객원교수, 데이콤 근무 경력 등이 있으며, 현재 한국IT서비스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서비스사이언스(2006, 매경출판, 공저), 프로젝트관리(2005, 전자신문사, 공저), 정보시스템진단과 감리(1999, 법영사), 통합사무자동화론(1996, 박영사, 공저) 등이 있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Omega,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Intelligent Systems in Accounting, Finance and Management 등의 국제학술지와 한국IT서비스학회지, 경영정보학연구, 한국경영과학회지, 경영과학, 정보처리학회논문지 등의 국내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양 경 식 (ksyang@skcc.com)

안양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국민대학교 대학원 정보관리학과에서 정보관리학 석사, 동 대학원에서 정보관리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안양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겸임교수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SK C&C 공공사업팀에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ITSM, EA/ITA, S/W생산성, 품질시스템 등이며 주요 연구결과는 한국SI학회지, 경영정보학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정보화정책 등 국내학술지에 발표하였다.